

요양관련 질의회시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1. 요양

가. 외국에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요양 급여 범위

질의내용

1. 해외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한국으로 이송,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및 이송료 지급여부.
가. 해외(특히 열대지방)는 우리나라와 기후 조건이 다른 상태에 있으므로 말라리아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예규 제188호 산재보험료 이송료 지급 기준을 해외에서 국내까지 환자 이송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지급 기준
2. 해외 출장중 교통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현지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치료비 지급 방법
가. 해외에서의 교통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진료절차 진료수가 현지 사정(약가의 차이 등)이 국내와 전혀 다른 상황에 있으므로 진료비 지급근거와 산정방법 여부

회시내용(보상 1455. 6-23152)

- 가. 질의 1에 대하여 말라리아의 업무상 재해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업무상 질병인가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이송료의 지급 여부는 노동부 예규 제188호 제2조에 규정된 이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에 한하여 지급할 것.

- 나. 질의 2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9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나. 사용자가 요양기관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가능 여부

질의내용

1. 갑이라는 근로자가 “4~5번 요추추간판탈출증”이라는 상병명으로 요양중인 바, 상병부위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의나 종합병원 전문과의 치료가 시행되어야 함에도 소규모 병(의)원에서 1년이상 통원치료하는 경우 사용자로서 요양기관 변경에 관하여 적정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현재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 지급됨으로 인하여 요양기간이 장기화되고 재해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민사배상이 시효 소멸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휴업급여를 계

속 받기 위해서 민사배상을 포기하고 계속 요양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휴업급여에 대한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재보 01254-8241)

- 1.에 대하여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업무처리 규정(노동부예규 제157호) 제24조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장은 요양중인 피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당해 의료기관에서 요양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문의의 의견을 들어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할 수 있고, 동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요양중인 피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관할 구역 내에 요양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전지요양조치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로서 요양기관 변경에 관하여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2.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란 상병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요양기간의 장기화라는 이유만으로 동 급여를 지급제한할 수는 없음.

다. 요양신청시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질의내용

업무수행중 재해를 당한 바 소속회사에서는 업무의 재해라 하여(관할노동관서에서도 업무

의 재해라 결정함) 심사청구 하려하나 사업주가 요양신청서상에 사업주의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처리 방법은

회시내용(재보 01254-565)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려는데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양신청서에 해당 의료기관의 초진소견을 받고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사유를 별지로 작성하여 요양신청서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귀하가 직접 제출할 수 있음.

라. 주치의가 완치로 인정시 요양종결 기능 여부

질의내용

1. 업무상 재해자로서 주치의사의 소견으로 부상부위가 이미 완치된지 오래 되었으며,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는 자이나 본인은 후유증이 있음을 이유로 계속 치료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요양을 종결하고 남은 장해도에 따라 장해 보상의 실시 가능 여부
2. 주치의사의 소견상 부상부위의 본 질환과 병발증이 완치된 자로서 앞으로 본인의 부주어나 섭생태만으로 병발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요양을 종결하고 남은 장해도에 따라 장해보상 실시 가능여부

회시내용(노직산 2700)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개정 제55조)의 요양의 정의는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이를 완전 치료시키기 위한 가능한 의학 적 필요행위를 통칭하는 것인 바, 귀 문의 1,2의

경우와 같이 더 이상 현대의 의학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명확히 인정되는(진단서가 필요) 경우에 한하여 치료를 종결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보상을 행할 수 있다고 해석 함.

마. 안경사용

질의내용

공업사에 근무하는 기계조립공은 재해를 당하여 서울소재 안과에 입원 백내장 수술을 하여 치료를 계속하던 중 부산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동안과에서 퇴원 부산으로 전원조치하여 부산소재 안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진료담당의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자비로 콘택트렌즈를 구입 사용하였으며(노동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한 것) 또한 안과에서 치료당시 진료 담당의의 지시로 보호용안경을 자비로 구입 사용하였다고 함. 이에 대한 “안경과 렌즈” 비용을 당소에 청구하여 온 바 이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서 타당여부.

회신내용(노직산 3383)

치료를 목적으로 구입 사용한 치료재료는 요양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귀문과 같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기간 중 구입 사용한 보호용안경과 치료후 시력증강을 위하여 구입한 “콘택트 렌즈”의 대금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보험급여로 지급 될 수 있다고 사료 됨.

2. 재요양

가. 재가용 기간 중 사적인 행위로 인한 상병 상태가 악화될 경우 재요양 승인 여부

질의내용

○○산업(주) 소속 상병근로자는 좌측 아킬레스건이 절단되는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입원 28일 통원 28일후 재가요양중 자택에서 1km정도 거리에 있는 피재자의 모친댁을 방문 후 목발을 짚고 귀가하다 노상에서 실족 전도되는 바람에 봉합된 아킬레스건이 이개되어 재수술을 요한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인 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갑과을 2가지의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갑론 : 피재자는 재가 요양중 요양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통원 중 실족 전도되어 그런 결과가 야기된 것이 아니고 사적 행위 중에 야기된 결과이므로 요양 승인을 할 수 없다.
2. 을론 : 피재자의 최초 업무상 부상이 없었다면 전도되지 않았을 것이고, 최초의 부상이 없었다면 전도되더라도 아킬레스건 절단은 있을 수 없으므로 요양을 승인하여야 한다.

회신 내용(보상 1455. 6-22623)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당해 상병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 보상을 받기 위하여 당해 상병원인이 당초 상병의 요양을 위한 필요 적절한 행위에 수반된 것이라야 하는 바, 귀문의 경우 동 재해가 재가 요양중에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기관에 통원 중 발생하였다면, 이는 정상인에 비하여 당해 근로자의 당초 상병 상태로 보아 보행중 전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요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모친댁을 방문하다 귀가 중에 일어난 실족 부상은 당초 상병의 요양을 위한 필요 불가결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재요양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임.

나. 퇴직후 재요양 대상 여부

질의내용

1. “재요양 실시여부는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노동지방사무소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산재보험법 제30조(시효)의 적용은 받지 아니 한다”라는 귀답에 대하여
- 가. “산재보험법 제30조의 적용은 받지 아니 한다”고 하나 본인이 퇴직하여 상당한 일(약10년)이 경과한 후라 하여도 전문의의 의견서(진단서) 첨부하여 지방사무소에 재요양을 신청하면 지방사무소장의 결정을 받아 재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본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후라 하여도 (가)항의 절차를 필하면 재요양 급여가 가능한 것인지
- 다. 전 각항의 경우에도 재요양 기간중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지, 지급한다면 법정근거인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일은 어느 시점을 근거하는 것인지

회시내용(보상 1458. 7-11585)

1. 재요양은 당초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퇴직 여부와는 무관하며,
2. 동일한 사유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산재보험법 제11조에 의거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3. 재요양 결정이 되면 재요양 기간중에도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휴업급여 산정 기초는 당초 평균 임금이 되는 것임.

3. 요양시 개호료

가. 가족의 철야 개호시 가산금 지급

질의내용

산재보험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예규 제 119호 1985. 11. 2) 제9조2항에 규정된 철야 개호를 가족이 담당하였을 경우 그 개호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개호료에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시내용(재보 32546-4418)

산재보험이송료 및 개호료지급기준(예규 제 147호 1987. 12. 23) 제7조 단서는 상병근로자의 가족도 개호담당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예규 제9조 제2항은 개호담당자가 철야하여 상병근로자를 개호할 때에는 그 개호료에 50%를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가족이 개호를 담당하는 경우 배제규정 없음), 귀소 의견과 같이 가족인 개호 담당자가 철야 개호를 한 경우에도(철야개호 인정에 따른 업무지침 : 보상 32550-19922. 1987. 11. 9 참조) 개호료 가산지급을 할 수 있는 것임 

